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334
----------	-------

발의연월일 : 2026. 1. 27.

발 의 자 : 윤준병·박민규·박희승
이성윤·문금주·이정문
임호선·안호영·문대림
양문석·최혁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해양 레저 활동의 증가 등으로 인해 수상에서의 사고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 현장 구조·구급활동 및 긴급구조 지원 수요도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구조·구급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상(死傷) 결과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감면해 주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적극적인 구조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서는 구조·구급활동으로 인하여 요구조자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그 구조·구급활동 등이 불가피하고 구조·구급대원 등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266조부터 제268조까지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상 구조·구급활동에 대해서도 동

일한 수준의 법적 보호 장치가 필요함.

또한 수난구호협력기관인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선박이 조난된 선박을 긴급히 예인하는 과정에서 파손 등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현행법은 국가기관에 대해서만 면책 규정을 두고 있어 제도적 보완도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구조·구급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형의 감면 근거를 신설하여 구조대원 및 민간 참여자의 적극적인 임무 수행을 보장하고, 긴급 예인 시의 면책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까지 확대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난구호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제3호, 제25조의2 신설).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호 중 “국가기관에”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로 한다.

제3장에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구조·구급활동으로 인한 형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구조·구급활동으로 인하여 조난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그 구조·구급활동 등이 불가피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266조부터 제268조까지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2. 수난구호참여자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조난된 선박등의 예인 시 책임) 조난된 선박등을 예인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인으로 인하여 조난된 선박등이 파손되거나 멸실되더라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 경우 조난된 선박등을 예인하는 자는 피예인선의 선장이나 소유자에게 그 뜻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제21조(조난된 선박등의 예인 시 책임) ----- ----- ----- ----- ----- ----- ----- -----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u>국가기관에</u> 소속된 선박이 조난된 선박등을 긴급히 구난하기 위하여 예인하는 경우	3. <u>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u> ----- ----- -----
<u><신 설></u>	<u>제25조의2(구조·구급활동으로 인한 형의 감면)</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구조·구급활동으로 인하여 조난된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경우
그 구조·구급활동 등이 불가피
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
여 「형법」 제266조부터 제268
조까지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
할 수 있다.

1.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2. 수난구조참여자